무배당 신한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약관

무배당 신한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기초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자"라 함은 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 장래에 확정급여퇴형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5. "수급권 확인"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 과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7.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8.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9.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0.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 무 등을 수행하기 우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단체 및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

-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 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퇴직연 금제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라 합니다)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1. 부담금의 통지
 - 2. 계약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 3. 연금 또는 일시금의 지급지시
 -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 5. 이전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 6. 적립금의 반환통지
- 7.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 등의 지급
 - 6.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2.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기타사항
- ②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의 경우 제25조(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율보증형의 경우 제28조(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실적배당형의 경우 제29조(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이전에 따른 해지시 회사는 금리연동형의 경우 제25조(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율보증형의 경우 제28조(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실적배당형의 경우 제29조(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 가입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부담금)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표준부담금은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2. 보충부담금은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3. 특별부담금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4.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18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그 추가 가입일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20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에게 해당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시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해지 청구서 (회사양식)
- 2.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 사본

제24조~제25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4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약관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5조 (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동일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계산시 적용이율의 80%'와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동일 자산관리기관으로의 이전일지라도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이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제28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6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

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 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 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 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 다.

제27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율보증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8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제38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9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급여(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금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0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 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제33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32조(실적배당 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특별계정운용보수)와 매년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NAV)의 9 5%이하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미만이 되도록 운용함

(2) 채권혼합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미만이 되도록 운용함

(3) INDEX채권혼합형

KOSPI200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하여 KOSPI200지수와 동일한 변동성을 갖는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의 40%이하로 투자하고,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으로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미만이 되도록 운용함

(4) 주식형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

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하로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 산의 30%미만이 되도록 운용함

(5) INDEX주식형

KOSPI200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하여 KOSPI200지수와 동일한 변동성을 갖는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유동성자산 등에 40%이하로 투자하는 펀드. 단,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30%미만이 되도록 운용함

(6) ETF인덱스주식형

KOSPI200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하여 KOSPI200지수와 동일한 변동성을 갖는 주식(코스닥 주식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자산 등에의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미만이되도록 운용함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32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펀드별 편입비율도 계약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8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 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제34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 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 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 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 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함)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제·개정 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6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좌당 기준가격 = <u>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u> 특별계정 총 좌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 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 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 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3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9조 (퇴직소득세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0조 (인감신고)

- ① 계약자는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5조(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28조(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29조(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년 이율보증형]

$$MVA = \max \left[1 - \left(\frac{1+i_j}{1+i_h} \right)^{n+\frac{m}{12}}, 0 \right]$$

MVA의 최대한도는 5%로 합니다.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 \max\!\left[\quad 1 - \; \left(\frac{1 + i_j}{1 + i_h + 0.5\%} \right)^{\! n + \frac{m}{12}}, \; 0 \right] \label{eq:max}$$

MVA의 최대하도는 10%로 합니다.

 i_j :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n: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소수점 4째자리 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의 기 준이율

단,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 이율보증기간 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의 기 준이율

n' : i_{h-1} 보증기간부터 i_{h+1} 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기간

m' : i_{h-1} 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i_i > i_k$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 = 0

3.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적용이율의 기준이율보다 높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시장가 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